

[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]
2014. 1. 7.(화)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(전문위원 이 창 환)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2. 2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 일자 : 2014. 1. 2.

2. 제안이유

-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명 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
- 나. 위치 :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-22(원학길 94-29)
- 다. 규모
 - 부지 : 450㎡(무상임대 : 진산석재 김정철 / 기간 : 2013.12.16~2016.12.31)
 - 건물 : 392㎡(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, 준공 2007.12.28)
 - 시설 :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설비 등
 - 사업비 : 451백만원(건축물 138, 기계설비 309, 부대시설등 4)
- 라. 주요 사용내용
 - 신기술개발사업 추진
(고부가가치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시험생산)
 - 검증, 분석업무 수행(품질 신뢰도 및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증대)
 -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시험서비스 제공 및 석제품질 시험 수행

마. 사용·수익허가 계획

○ 허가목적

-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·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·운영
- 거창화강석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의 지속추진
-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

○ 사용기간 : 2014. 1. 1 ~ 2016. 12. 31(3년간)

○ 허가대상 :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사장

○ 허가물건 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및 기계설비(붙임참조)

○ 사 용 료 : 군의회 동의를 통한 사용료 면제

4. 참고사항

가. 기 사용료 면제 현황

○ 허가기간 : 2011.1.1 ~ 2013.12.31

○ 사용료 : 21,512,357원/년 (군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, 2010.12.16)

나. 사용료 부과시 산출내역

○ 금액 : 269,400,000원(재산가액)×50/1,000(요율) = 13,470,000원/년

※ 재산가액 산출 : 269,400,000원

- 건 물 : 127,400,000원(시가표준액)

- 기계설비 : 142,000,000원(감정평가결과)

다. 관계법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: 사용료의 감면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: 사용료의 감면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사안으로

-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출연 기관으로 거창화강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
-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기능 석재를 한곳에서 생산하는 공장이며,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로서 특화제품 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 생산 공장으로
- 거창군을 대표하는 지역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·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·개발을 통하여 양산체제를 구축, 공동생산·전시 또는 판매를 위한 시험생산 및 연구에 필요한 공장이므로 비영리 법인인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자료

□ 사용·수익허가 재산목록

○ 건 물 :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, 392m²

세부시설명 면 적(m ²)	공 장	사무실	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	화장실
392	302	26.4	56.1	7.5

○ 기계설비

설비명	용도	규격	수량	비고	
주 설 비	거치대	석재 투입장치	1,120mm×2,000mm× 800mm	1대	
	세척대 (Water shower)	석재에 묻어있는 이물질 을 고압의 물로 세척 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공기분사대 (Air blowing)	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건조대 (Dryer)	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광촉매코팅기 (Photo-catalyst coater)	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열처리대 (Heat treatment)	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 시키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적재대	코팅된 석재를 반출 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800mm	1대	
정 수 설 비	고압펌프	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	380V,1.2Kw S.P : 7kgf/cm ² C : 24,400kg/h	1대	
	정수설비	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 되는 세척수의 이물질 을 제거하는 장치	마이크로필터:<25μm 압력조정기:7kgf/cm ²	1대	

설비명		용도	규격	수량	비고
공압설비	공기압축기 (Screw compressor)	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하는 장치	AC 380V, 22Kw FAD : 3.13m ³ /min W.P : 9.0kgf/cm ²	1대	
	냉동식 건조기	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85Nm ³ /min W.P : 9.0kgf/cm ²	1대	
	흡착식 건조기	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65Nm ³ /min D.P : -25μm 이하	1대	
	에어탱크 (Air tank)	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	M.P : 9.9kgf/cm ² G W.P : 9.0kgf/cm ² G	1대	
집진및탈취설비	집진기	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	820mm×820mm×1,780mm	1대	
	광반응식 스크리버 (탈취설비)	광촉매 코팅용액 성분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	1,700mm×400mm×1,400mm	1대	
위생시설	변기		양변기 소변기	2개소 1개소	
	세면대		세면대	1개소	
	정화조		1m ³ /1일	1식	

6. 참고자료 : 관련법령 발췌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·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

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4>

[전문개정 2009.4.24]